

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1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5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7. 3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여 덕 수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를 설치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·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재원에 “기타 수입금(지원금)”을 신설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
 - 위원회의 심의사항
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· 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
 -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회계공무원의 명칭 및 관직 변경
 - 기금출납명령관(주민생활지원국장) → 기금운용관(청소행정과장)
 - 기금출납공무원(청소행정과장) → 기금출납원(재활용담당주사)
- 결산보고 :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→ 80일 이내 (안 제8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